

인천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단2728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이효선

피 고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이태선

변론 종결 2019. 8. 21

판결 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6. 8. 접수 제1022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G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다. 망 G은 1974. 7.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 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7.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6. 8. 접수 제102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고,원고들이나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사실이 없으며,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도 없었으므로,위

보증서는 허위이고,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것이므로,이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판결 참조).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순차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가능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망 G을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H 명의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용래

별지